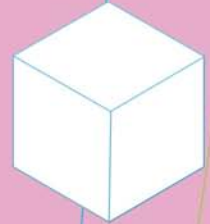




제3장

디자인 침해시 구제제도



중국 전리법상 디자인침해행위

중국의 전리법은 디자인 침해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디자인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디자인 권리를 실시하는 행위 (전리법 제57조)
-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행위 (전리법 제58조, 전리법실시세칙 제84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디자인번호를 표시한 행위
 - 타인의 디자인권리증서, 디자인권리서류 또는 디자인출원문건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 디자인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제품을 디자인권리가 부여된 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전리법 제59조, 전리법실시세칙 제85조)
 - 디자인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디자인권리표시를 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한 행위
 - 디자인무효선고를 받은 후에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계속 디자인권리를 표시한 행위
 - 디자인증서, 디자인서류, 디자인출원서류 등을 위조·변조한 행위

II

구제제도의 특징

중국 기업에 의해 자사의 디자인이 무단 도용됐을 경우, 피해 기업은 사법기관인 인민법원에 제소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인 전리업무관리부서를 이용해 자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두 기관에 의해 실현되는 중국의 독특한 지적재산권 구제제도를 “쌍궤제(雙軌制, dual track system)”라 한다.

[그림 3-1] 쌍궤제를 통한 디자인침해 구제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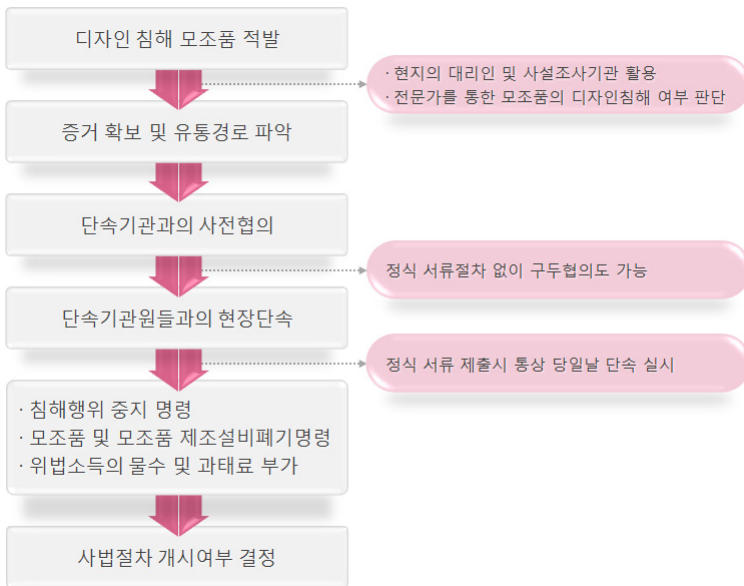
쌍궤제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는 전리업무관리부서에 의한 부분을,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는 통상적으로 민사절차에 의한 부분을 의미한다.

Ⅲ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행정기관인 (각 성급) 전리업무관리부서에서 디자인침해행위에 대한 처리 및 조정을 담당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는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에 비해 그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행정기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절차



1. 청구기관

- 피청구인의 소재지나 침해행위지의 상·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 등에 설치된 각 성급 전리업무관리부서

[표 3-1] 지재권 관련 각 행정기관별 주요 단속 대상 행위

| 행정기관 | 단속대상 |
|----------|--------------------------------|
| 공상행정관리국 | 상표권 침해행위 |
| 전리업무관리부서 | 전리침해행위, 전리사칭행위, 전리허위표시 |
| 품질기술감독국 | 원산지 표시 위반, 제조지 허위표시, 품질표시 허위표시 |
| 세관 | 지재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화물의 통관행위 |
| 공평교역국 | 부정경쟁행위 |
| 공안국 | 지재권침해행위 중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

2. 청구요건

- 전리업무관리부서에 구제를 청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전리행정집행법판법 제5조).
 - 청구인이 디자인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
 -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한다.
 - 명확한 청구사항과 구체적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접수사건이 전리업무관리부서의 접수사건 범위와 관할에 속해야 한다.
 - 당사자가 당해 디자인침해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지 않아야 한다.

3. 전리업무관리부서의 행정조치

1) 즉시정지명령

- 전리업무관리부서는 디자인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조정

- 전리업무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3) 위법소득 몰수 및 과태료 부과

- 전리업무관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디자인침해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림 3-3] 전리업무관리부서의 행정조치



가. 위법소득 몰수

- ▶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 제품의 판매가격에 판매한 제품의 수량을 곱한 금액
- ▶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체결로 인한 행위자의 수취 비용



주의사항

- 효과적인 위법소득의 몰수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

-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이나 계약체결을 통해 수취한 비용과 같은 디자인침해 행위자의 위법소득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침해자가 판매한 모조품 수량 또는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의 증거수집이 필요하다.

나. 과태료 부과

- ▶ 디자인도용행위 : 위법 소득의 3배 이내 또는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엔 이하
- ▶ 디자인사칭행위 : 5만 위엔 이하

4) 사법기관으로의 이관

- 타인의 디자인도용 행위가 성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또는 디자인권리증서의 위조 또는 변조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전리업무관리부서는 사법기관으로 이관시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문제점

- 전리업무관리부서의 구제 한계 -

- 전리업무관리부서는 강제집행 권한이 없다.

전리업무관리부서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침해행위정지명령 및 디자인 침해품의 재조장비, 침해품의 폐기명령에 그치며, 모조품 제조업체의 불응시 이를 강제 집행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전리업무관리부서는 손해배상명령 권한이 없다.**

전리업무관리부서는 피해 당사자의 청구시 손해배상액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손해배상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리업무관리부서의 과태료 처분은 강제력이 없어 침해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실제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리업무관리부서는 신청한 권리부분만 단속 한다.**

전리업무관리부서는 권리자가 신청한 권리부분에 대해서만 단속한다. 즉, 권리자가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단속을 신청한 경우, 전리업무관리부서는 단속현장에서 그 외의 지재권 침해 물품을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



주의사항

- 디자인침해소송중 합의시 향후 디자인침해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 중국 법률은 재판 도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소를 취하할 경우, 동일 안건으로 소송을 재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일 침해행위재발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 전 반드시 합의서에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1) 청구기관(관할법원)

[표 3-2] 디자인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관할법원

| 구 분 | 1심 | 2심 |
|--|---|---|
| 관할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 ▶ 경제특별구의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개방도시의 경우 중급인민법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성·자치구·직할시 고급인민법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법원의 민사재판은 2심중심제이다. | | |



참 고

디자인침해 소송의 경우, 관할권은 침해행위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있으나, 원고가 모조품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관할권은 제조지의 법원이 가진다. 단, 제조업체와 판매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매지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주의사항

- 디자인침해소송 중 발생한 새로운 디자인침해에 대한 소제기시 관할법원의 선정에 주의하자! -

- 디자인침해소송 계류 중에도 중국 모조품제조업체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침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침해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침해업체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남발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소송계류 중 발생한 새로운 디자인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계류 중인 법원 이외의 다른 관할 법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례 】

2007년 자사의 제품을 침해한 중국 모조품제조업체를 상대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낸 국내 CPU 쿨러 개발업체 Z사는 사건의 2심 계류 중 동일한 중국 모조품제조업체가 기존의 침해품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모델명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소송이 계류중인 제조업체의 소재지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신 모조품 제조자와 다른 관할권에 소재하고 있는 모조품 판매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판매자의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 소제기

가. 원고

- ▶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기타조직을 포함한다.

나. 소제기 요건

- ▶ 명확한 피고가 존재해야 한다.
- ▶ 구체적인 소송청구와 사실,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다. 소장의 제출

- ▶ 인민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거나, 구두형식으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피고인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기록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필수 기재 사항

- ▶ 당사자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업무단체와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와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인의 성명, 직업
- ▶ 소송청구와 사실에 근거한 이유
- ▶ 증거와 증거출처, 증인성명과 주소

3) 입증책임

- 디자인 권리자는 당해 디자인침해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증거

가. 증거제시

- ▶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증거제시 책임이 있으며,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

- ▶ 서류증거 ▶ 시청각자료 ▶ 당사자의 진술
- ▶ 물증 ▶ 증인의 증언 ▶ 감정결론



주의사항

-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는 공증이 필요하다! -

-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는 그 국가 내의 공증인에게 공증되어야 하며, 중국 대사나 영사에 의해 공인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중국 법원이 인정한 번역 회사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다. 증거보전

- ▶ 소송참가인은 소 제기 이후의 상황에 의해 얻기 어렵거나 소멸된 증거에 대해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인민법원 스스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소송시효

- 권리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



주의사항

- '소전가처분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 중국은 우리의 가처분 제도에 해당하는 '소전가처분신청'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디자인 침해 발생시 소제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모조품제조업체가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나 증명이 있다면 '소전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사례 】

2007년 국내 CPU 쿨러 개발업체인 Z사는 자사의 제품을 침해한 P사의 다량 모조품이 중국 전자상가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Z사는 본안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후 발생될 피해와 증거 멸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침해품 가치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P사를 상대로 '소전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디자인침해금지 가처분결정' 및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1심 판결을 승소로 마칠 수 있었다.

- '소전가처분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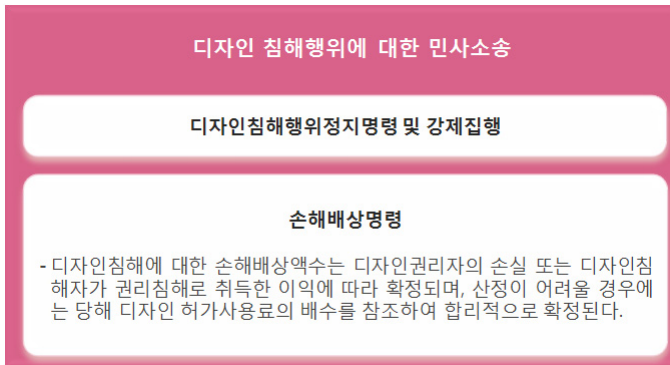
- '소전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기각된다.

- '소전가처분신청' 후 본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소전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본인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6) 인민법원의 조치

[그림 3-5]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내용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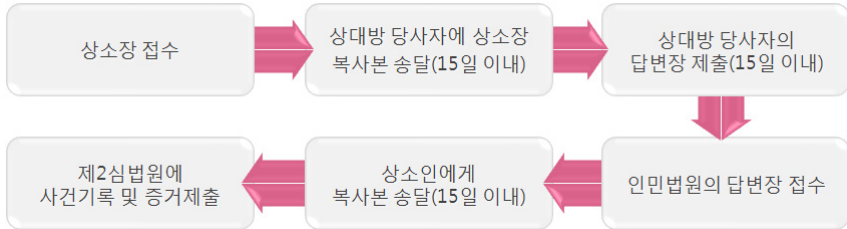
- 소송시효 경과 후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친다! -

- 디자인 권리자는 2년이 경과된 디자인 침해 건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 당해 디자인의 보호기간이 그 범위 내여야 하며, 모조품제조업체의 침해행위가 제소시까지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조건에 충족한다면, 인민법원은 피고에 대해 침해행위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디자인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제소한 날로부터 2년 전까지의 침해 건만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7) 상소

-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할 수 있다.

[그림 3-6] 상소절차



가. 상소기관

- ▶ 제2심의 상급인민법원

나. 상소장의 제출

- ▶ 원심인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 또는 대표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한다.

다. 필수 기재 사항

- ▶ 당사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또는 타조직의 명칭 및 그 주요 책임자의 성명
- ▶ 원심을 판결한 인민법원의 명칭, 사건의 번호와 사건의 유래
- ▶ 상소의 청구와 이유

다. 상소기한

- ▶ 1심 법원의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민사절차의 문제점 -

-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큰 비용이 들어 신속한 법적대응이 어렵다.
- 디자인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는 디자인침해로 받은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디자인침해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되지만, 이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 손해배상액산정시 판매되지 않은 모조품의 경우 판매량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침해자가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매량을 산정한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이 우리 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손실 또는 디자인침해자의 부당 이익을 확정시키기 어려운 경우, 당해 디자인의 허가사용료 배수를 참조한다. 그러나 법원의 인정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 디자인침해 방지책으로서의 실효성은 없다.

2.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모조품의 침해 정도가 디자인도용행위에 성립하고,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은 중국 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에서 디자인도용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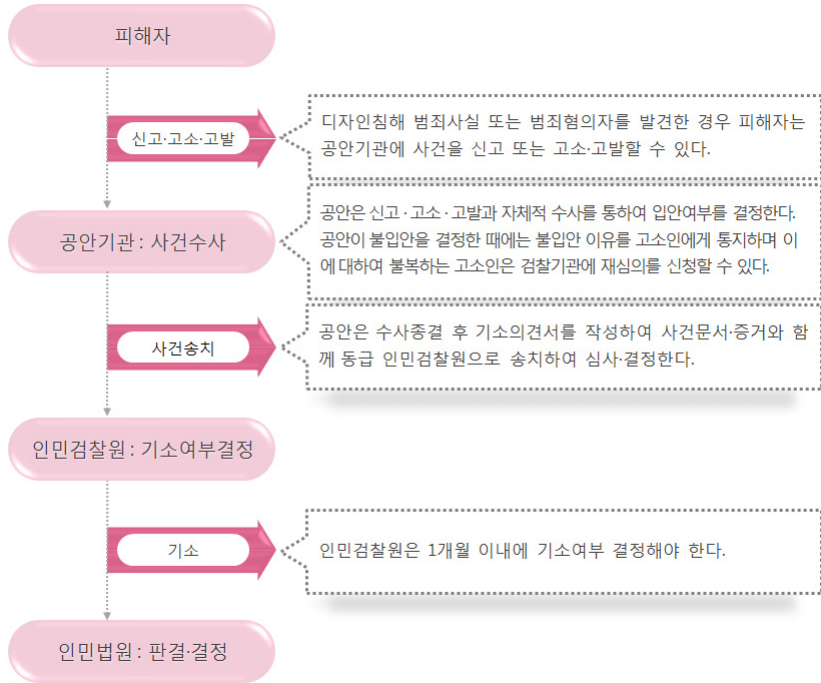
1) 형사처벌의 요건(형법 제216조)

- 타인의 디자인도용행위가 성립하여야 한다.
-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디자인도용행위자의 불법사업규모(생산·보관·운송·유통한 모조품의 총가치)가 200,000위엔(약 2600만원)이상인 경우
 - 침해자의 불법소득이 100,000위엔(약 1300만원)이상이거나 또는 디자인도용행위로 인한 디자인 권리자의 직접적인 침해가 500,000위엔(약 6600만원)이상인 경우
 - 기타 상황이 심각한 경우

2) 공소(公訴)절차에 의한 구제

- 디자인 권리자는 당해 디자인침해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림 3-7] 공소절차



참 고

우리의 경찰청과 검찰에 상응하는 중국의 공안과 인민검찰원은 우리와 달리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이다.

3) 자소(自訴)절차에 의한 구제

가. 의의

- ▶ 디자인도용의 경우 공소절차에 의한 구제 외에도 일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 디자인도용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자소(自訴)절차'라 한다.

나. 요건

- ▶ 국가이익과 사회질서에 대한 침해정도가 지나치게 심하지 않고, 3년 이하 유기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문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디자인도용사건이어야 한다.
- ▶ 피해자가 디자인도용행위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 ▶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나 공안 또는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그림 3-8] 자소절차



4) 입증책임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책임은 인민검찰원과 공안에 있으나, 자소사건의 경우 자소인 스스로가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5) 상소

가. 상소권

- ▶ 피고인·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결정에 불복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또한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결정에 명백히 착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상소제기 요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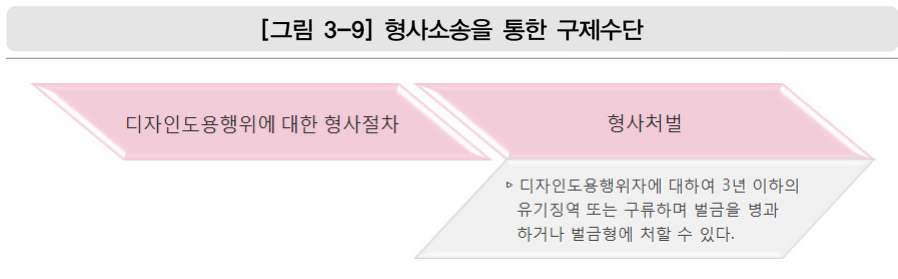
- ▶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상소제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상소제기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하고, 동시에 요청인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다. 상소 기한

- ▶ 판결 불복 상소기한 : 10일
- ▶ 결정 불복 상소기한 : 5일
- ▶ 판결문·결정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

6) 인민법원의 조치

[그림 3-9] 형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





주의사항

- 형사소송 중 부대민사소송(刑事附帶民事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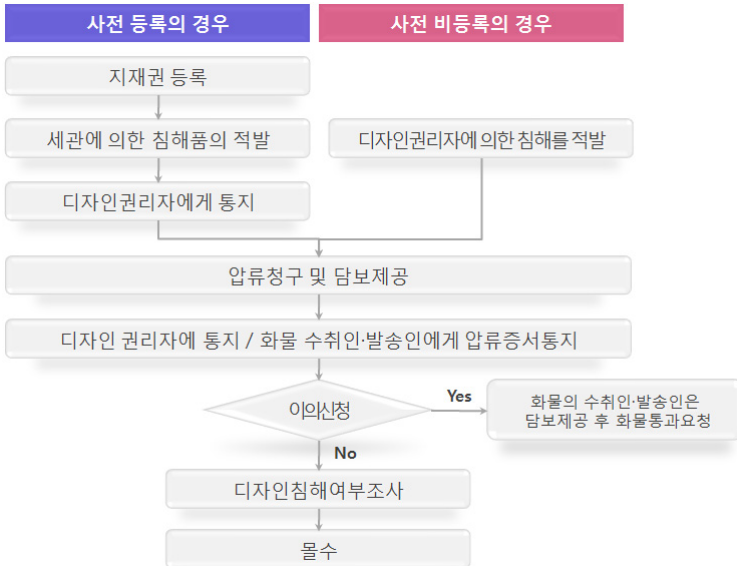
-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자인도용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소송 진행 중이라도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형사사건 재판 진행의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재판 후 동일한 재판조직으로 계속 부대민사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대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하여야 한다.

V

세관에 의한 구제

디자인 권리자가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세관총서에 등록한 경우, 디자인침해 발생시 세관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디자인 권리자 스스로 모조품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세관에 통보하면, 디자인침해 피해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모조품에 의한 디자인침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0] 세관에 의한 구제 절차





참 고

세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디자인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디자인침해 협의가 있는 압류화물에 대해 침해행위정지명령 또는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디자인등록

1) 등록자격

-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
- 단, 중국 내에 영업장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중국 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2) 등록기관

- 해관총서(海关总署) :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

3) 디자인등록시 제출서류 및 필수기재사항



제출서류

- | | |
|---|--------------------------|
| ① 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
| ② 신청인 신분증 | <input type="checkbox"/> |
| ③ 등록증명서류 | <input type="checkbox"/> |
| ④ 수수료 납부 은행영수증 사본 | <input type="checkbox"/> |
| ⑤ 기타 (필요할 경우) | <input type="checkbox"/> |
| - 침해물품 수출입 증거, 실시허가의 경우 그 내용 및 기타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



필수 기재사항

- 디자인 권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또는 국적 등
- 디자인의 명칭과 내용 및 기타 관련 정보
- 디자인 권리의 허가·실시상황
- 디자인 권리자가 디자인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과 생산지, 수출입지역 세관, 수출입업체, 주요특징, 가격 등
- 이미 알고 있는 디자인침해화물의 제조업체와 수출입업체, 수출입지역 세관, 주요특징, 가격 등 신청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동 증명서류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
- 우편 등기에 의한 제출
- 세관 홈페이지 통한 제출

[그림 3-11]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내 지재권등록란

http://www.customs.gov.cn

step1)

公开: 各关概况 署令公告 海关法规 政策解读 计划规划 海关统计 监测预警 海关要闻 各关动态 政府会议
 专题聚焦 政府采购 拍卖信息 社会监督 黑名单 口岸管理 国际合作 教育培训 网站建设 访问分析
 办事: 行政许可 办事指南 下载中心 电子口岸 预归类申请 海关公告 贸易救济案件 知识产权备案申请
 互动: 业务咨询 人民来信 领导信箱 申请公开 在线访谈 网上直报 知识产权备案申请 建议 信息公开
 查询: 商品信息 通关单证 归类信息 归类公告 归类决定裁定 知识产权备案申请 备案 海关法规

知识产权备案申请
지식재산권비안신청

step2)

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申请系统
Record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首页 \ 知识产权海关保护

欢迎使用“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申请系统”。本系统可以提供“知识产权备案信息查询”和“知识产权备案申请”服务。

- 查询知识产权备案信息，可以直接在公共查询区窗口中输入需要查询的关键词，无需进行用户注册和登陆。
- 申请知识产权备案，应当首先在用户登录区进行用户登录。首次进行知识产权备案的用户，还应当进行注册。
(注意：已经在海关总署进行了知识产权备案的用户不再允许进行新的注册)。

更新日期: 2008-2-4 当前有效备案: 9388 商标权备案: 6391 著作权备案: 390 专利权备案: 3607

公共查询

申请人名称/姓名:
 权利名称:
 权利注册授权号:
 备案权利类别: 全部
 备案内容类型: 全部
 备案号:
 查询

用户登录

帐号:
 密码:
 保存申请人编号和密码
 登录 重置
 找回密码 找回帐号
 注册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主办 版权所有 未经授权 禁止转载
 电话: 010-65194114 邮编: 100730 地址: 北京帝建国门内大街6号

[지식재산권해관보호비안신청계통]

2. 디자인 권리자의 압류청구 및 담보의 제공

1) 압류청구

- 디자인 권리자가 세관으로부터 디자인침해혐의화물의 적발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 후 3일 이내에 당해 물품의 압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혐의화물의 수출입사실을 인지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2) 압류청구시 제출서류 및 필수기재사항



제출서류

- ① 서면신청서
- ② 디자인 권리자의 신분증 복사본 또는 등기등록증서의 부분 또는 등록기관이 인증한 복사본
- ③ 세관에서 추가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필수기재사항

- 보호를 신청하는 디자인의 명칭·세관등록번호
- 디자인침해혐의자의 명칭·주소·법정대표인·주요영업장소
- 디자인침해화물의 명칭·규격 등 관련사항
- 디자인침해혐의화물의 예상 수출입 항구·시간·운송수단·수하인 또는 적송인 등의 관련 사항
- 디자인 침해 관련 증거
- 세관이 취할 조치
-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내용

3) 담보의 제공

- 디자인 권리자가 세관에 디자인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시, 해당화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디자인 권리자가 기한 내에 압류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화물을 억류할 수 없다.

3. 디자인침해 여부 조사

- 디자인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을 적발한 세관이 디자인 권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디자인 권리자가 당해 화물의 압류를 청구한 경우, 세관은 압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압류한 화물의 디자인 침해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다만, 관계당사자가 이미 디자인침해분쟁으로 디자인 권리의 주관부서에 분쟁처리를 요청했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관계기관(공안국, 인민검찰원)에 조사 내역이 이관된 경우, 세관은 모든 조사를 종료한다.

4. 디자인침해품의 몰수

- 디자인침해가 확정된 경우, 세관은 디자인침해품을 몰수하고,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하인 또는 발송자에게 송부한다.
- 디자인침해혐의화물에 대한 조사 후, 디자인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신청인은 부당신청이 인정되어 인민법원의 재정 또는 판결에 따라 그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세관의 조치에 대한 불복

1) 불복제기권자

- 세관의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

2) 불복신청기관

- 처벌결정을 내린 세관 혹은 상급 세관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불복신청기간

- 처벌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또는 집행 처벌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제점

- 세관을 통한 디자인보호조치 이용시 문제점 -

- 디자인 권리자가 세관에 압류를 청구할 경우, 디자인 권리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 권리침해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세관을 통한 지재권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